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3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송기현·이연희·이정현
황정하·김남국·김우영
이훈기·김 현·한준호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

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재배치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장

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용 부담이나 재정지원(연구개발사업 외의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축되거나 운영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연구장비”란 연구개발 활동 또는 연구지원 활동에 직접 사용되

는 유형·무형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장비와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설비, 부대시설, 정보시스템 및 장비전문인력 활용체계 등이 결합된 연구공간 또는 기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유기관”이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보유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활용”이란 보유기관이 그 연구시설·장비를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직접 사용을 허용하거나 이를 활용한 시험·분석 등 연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장비전문인력”이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및 공동활용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장비생성데이터”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또는 활용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8. “장비운영데이터”란 장비생성데이터 중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전담기관”이란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0. “보유예정자”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하려는 연구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11. “이용자”란 보유기관의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거나 공동활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요구되는 연구시설·장비
2. 국방·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개 또는 공동활용이 제한되는 연구시설·장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및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연구시설·장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보유기관의 책무) ①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과 안전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고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공간 및 인력 등의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비생성데이터 중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운영 등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장비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산 연구장비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종료계획
4.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거나 운용할 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2.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배분 및 장비전문인력의 배치
3.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4.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이전·재배치 및 처분과 그 운용에 필요한 부품·재료 등의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유기관의 장은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의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지원
 2. 위원회 및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3.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관리·분석
 5. 장비생성데이터의 연계 및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화
 6.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7. 제19조제6항에 따른 관리계정 운영 현황의 점검
 8. 연구시설·장비 활용도의 평가, 이전·재배치·처분 및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종료에 대한 지원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비전문인력 경력관리체계의 운영
 10. 제25조에 따른 장비전문인력의 인정
 11.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전담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소관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유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평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두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운용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과 운용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 및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과 정보 관리

- 제13조(연구시설·장비 도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유 예정자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구축에 필요한 표준건적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그 도입 및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구축하거나 그 예

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는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도입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적합한 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적용 대상 및 제3항에 따른 도입 여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 및 갱신) 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연구시설·장비의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점검·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정보의 범위와 항목, 갱신 주기, 점검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자가 연구시설·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운영·활용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연구 관련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준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정보(점검·이전·재배치 및 처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비전문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연구시설·장비 데이터) ① 정부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유지·보수 및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장비 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구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집 방식과 표준을 그 도입·구축 과정에 필요한 공고, 협약 및 관련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 ⑤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로서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연계하여야 하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적용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체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운영·관리

제18조(공동활용 원칙)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도입 후 일정 기간 단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공동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국가안전보장, 연구보안,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의 보호, 생명윤리, 감염병 또는 위험물 등 안전상·윤리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연구시설·장비의 고장, 정비, 검증 또는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범위에서 기관 내부와 외부의 이용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활용의 절차, 이용 가능 시간, 이용료, 이용 제한 사유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해당 공동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시설·장비의 운영재원)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운영재원 관리계정(이하 “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활용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사업비 중 직접비로 계상하여 관리계정에 적립·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산정·징수하여 관리계정에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계정의 재원은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관리계정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계정의 설치·운영, 운영비용의 적립·관리, 이용료의 산정·징수·적립 및 관리계정 운영 현황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현장 방문조사를 포함한다)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결과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수보유기관의 지정 및 해당 보유기관의 관련 예산의 배분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평가의 대상, 항목, 절차 및

방식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전·재배치 및 처분)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장비(이하 “방치장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용으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는 처분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연구시설·장비는 이전하거나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를 활용 중인 연구자가 이직이나 소속 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으로의 연구장비 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보유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불용 결정의 방식, 이전·재배치·처분 및 이행 실태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처분) ① 보유기관의 장은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한 후 그 운영·관리 상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종료 및 처분이 필

요한 경우에는 종료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활용종료 및 처분이 완료된 후 그 종료계획의 이행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기준, 운영·관리 상황의 보고, 종료계획의 수립·심의·보고 및 이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우수연구시설 및 우수보유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시설과 보유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으로 각각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 중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대규모 연구시설 또는 전략적 공동활용연구시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공동활용연구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 우수보유기관 또는 국가핵심공동활용연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장비전문인력의 운영

제24조(장비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전문인력의 양성·고용 및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 중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에 적합한 등급을 갖춘 사람을 적정 규모로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와 제3항에 따른 인력의

적정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장비전문인력의 인정 등) ① 장비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을 확인·관리하고, 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분야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장비전문인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장비전문인력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장비전문인력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전문인력의 경력, 교육·훈련의 이수 및 직무 수행 실적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장비전문인력의 직무 분야, 인정 기준, 등급, 신청 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준수의무 및 자료의 제출) ① 보유기관과 이용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도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대리인, 이용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장비 또는 그 운용에 필요한 부품·재료 등을 처분한 보유기관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제재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관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시설·장비 관련 지원사업의 선정을 제한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수보유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장비 또는 그 운용에 필요한 부품·재료 등을 처분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 또는 갱신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보유기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해당 보유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보유기관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또는 감사·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시설·우수보유기관 또는 국가핵심 공동활용연구시설 지정의 취소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담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또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 또는 갱신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